

간호(간병)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- **수급자격 인정 요건**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7호)
- ①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,
 -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
- (단, ③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아래의 준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)

□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

- ① **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**(*최소한 30일 이상 간병기간 필요)
 - 진단서에 기재 내용: 환자의 인적사항, 병명, 진료내역,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
 - 간호 대상자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(*보호자의 도움이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)
- ② **본인(신청인)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**
 - 간호 대상자 명의(이름)의 가족관계증명서
 - 등본: 신청인 기준(동거시), 대상자 기준(비동거 부모시)
 -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
- ③ **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**
 - 일을 하고 있는 경우: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 - 원거리 거주: 주민등록등본
 - 기타 장애인등록증, 재학증명서 등
- ④ **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**
 -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(이직회피노력 확인)
- ⑤ **간호해야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**(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)
 -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,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
 -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,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

□ 주의 사항

간호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즉, 간호의 필요성(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)이 해소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,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(120일~270일) 전부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일 후 1년 이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.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44, 8954~9)

간호로 인한 퇴사 사유 확인서(사업장용)

귀사에서 퇴사한 근로자()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요청하오니,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직 근로자	성 명			생년월일	
	주 소				
	이직당시 근무부서				
확 인 내 용 (해당사항에 √표시)					
1. 상기인의 업무내용(구체적으로)					
2. 상기인이 평소 가족병간호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 여부			☐ 있다. · 시 기 : · 질병내용 :		☐ 없다.
3. 상기인이 가족병간호와 관련하여 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 여부			☐ 가능함 ☐ 불가능함		
6. (가족 병간호와 관련하여) 상기인 이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 - 있을 경우 요청기간 모두 기재 (최종 요청까지)			☐ 있다 · 요청시기, 면담자: · 요청기간: · 사용기간: · 휴직·휴가 사용 후, 추가 요청한 경우(최종) -재요청시기 및 면담자: -요청기간: -사용기간: ☐ 없다		
6. 회사 규정상 상기인에게 퇴사 대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			☐ 부여할 수 있다. · 가능 기간 : ☐ 휴직 부여 불가능 · 구체적 이유 :		
7. 기타 상기인의 간호 등으로 인한 이직과 관련된 참고사항					

20 년 월 일. 위의 사실을 확인 합니다.

확인자, 직위 및 성명: (서 명)
사업장명: (직 인)

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귀하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,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업주(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)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일자	
회사주소		회사전화번호	
담당업무			

위 본인은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(※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)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수급자격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